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4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4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건설공사 시행사(시공사)가 도내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약정하거나 도내 생산자재 사용을 약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수수료의 면제 근거조항 마련(안 제5조)
  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(시공사)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면제
    1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
    2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
    3.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·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    4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- 투자협약 미 이행업체에 대한 시험수수료 강제징수규정 마련(안 제6조)
- 용어의 정비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안 제1조)
  - 수수료의 감면 → 수수료의 면제(안 제5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건설공사 시행사(시공사)가 도내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약정하거나 도내 생산자재 사용을 약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·보완하려는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조례개정후에 시험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어느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